	자 체 규 정	규정번호	3 - 6 - 17
		제정일자	2019. 07. 01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번호	
		관리부서	평생교육원
		페 이 지	4

개 정 이 력		
순번	개정일자	개정내용

구 분	작성	검토(1)	검토(2)	승인
소 속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송호대학교
직 위	직원	원장		총장
성 명	이미란	김나영		이경중
서 명				
년월일				2019. 07. 01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송호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의 평생교육지원체제를 통한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성인학습지원센터의 운영은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별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환경등을 고려하여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지원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업무) ① 성인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성인학습지원센터 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수학습 방법 개발 및 보급
4. 성인학습 패러다임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이해 제고 및 동참 유도
5. 성인학습자 상담 및 지원
6. 학습이력관리 및 경력 개발 지원
7.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등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성인학습지원센터의 전반적인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추진위원회

제5조(설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장, 기획실장, 평생교육원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입학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2.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추진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제7조(기능) 추진위원회는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추진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 계획 수립, 조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자체평가에 관한사항
3. 사업비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세부집행지침 관리에 관한사항
5.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장 자체평가위원회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①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를 교내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수행한다.

1. 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평가
2. 성과지표 점검 및 달성여부 확인
3. 기타 사업평가와 관련된 주요사항

④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성인학습자 지원 및 포상

제9조(동아리) 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취・창업활동지원) 학습자의 취・창업 지원활동은 우리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자격 응시료 지원) 학습자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돕기 위해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장학금) ① 예산규모에 따라 성인학습자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장학금은 대학내규에 따른다.

제6장 재정 및 기타

제13조(재정)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송호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및 정부기관의 국고보조금, 지자체의 사업지원금,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은 관계법령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매뉴얼 범위 내에서 집행 세부기준을 따른다.
③ 기타 외부재원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단, 기준이 없는 경우 송호대학교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4조(회계)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송호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